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48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영향평가 예외 대상사업에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의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의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14조제2항)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의 경우 평가서 검토의견 통보기한 명시에서 제외함(안 제15조제1항)
- 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제3항)
- 마.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 사전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 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심의·자문 사항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를 추가함(안 제

22조제1항)

- 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안 제22조제7항, 안 제24조)
- 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을 “제외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작성계획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 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 차.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승인기관장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
- 카. 자문 활동을 한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가) 개선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토록 개정
 - (나) 조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 필요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의견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5. 30. ~ 6. 19.) 결과: 의견있음(반영)
 - (가) 제출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 심의 대상일 경우 조례상 평가서 검토 기간 수정 필요
 - (나) 조치내용: 반영, 제15조제1항 검토기간 후단에 단서 신설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양은영 (☎2133-3527)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를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로,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환경보전목표”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의견수렴 등)”을 “(의견 수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을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을 “초안(관계행정기관”으로,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요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사업의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 이상의 구”를 “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받은”을 “송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법 제14조”를 “법 제14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견수렴절차”를 “의견 수렴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소신청인원”을 “최소 신청인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류사본”을 “서류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평가서등”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로, “재대행하도록

하는”을 “재대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평가서”를 “평가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판단 기준은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를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를 “이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를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서 등”을 “평가서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을 “승인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를 “이 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을 “승인기관장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의”를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보전방안을 제출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4항 중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을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협의의 절차를”을 “변경협의 절차를”로, “변경협의의 사유”를 “변경협의 사유”로, “변경협의의 절차가”를 “변경협의 절차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변경협의의”를 “변경협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사 중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 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되고”를 “맡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남은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회의 구성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구성원”으로, “개의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을 “구성·운영, 심의방법 및”으로 한다.

6. 제20조제9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23조제3항 후단 중 “위원 3분”을 “소위원회 위원 3분”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중 “의견수렴”을 각각 “의견 수렴”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대상사업”을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를 “(협의절차 면제 대상 사업자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장과 협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자문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제32조의 제목 “(평가서의 공개)”를 “(평가서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평가서등”을 각각 “평가서등”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에너지개발의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제6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제2조(정의) ----- ----- <u>뜻</u>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u>대하여</u> 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대해서</u> 는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 <u>자연재해대책법</u> 」 제46조의 <u>재해복구계획</u> 및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 제59조의 <u>재난복구계획</u>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u>환경보전방안</u>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u>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생략)</p>	<p>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 <u>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u> ----- ----- ----- <u>환경보전목표</u>----- ----- <u>환경영향평가</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u>의견수렴 등</u>) ① 사업자는 <u>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u>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u>초안과 관계행정기관</u></p>	<p>제8조(<u>의견 수렴 등</u>) ① ----- <u>규칙</u>----- ----- ----- ----- ----- ----- -----.</p> <p>② ----- ----- ----- ----- ----- <u>초안(관계행정기관</u>-----</p>

현행	개정안
<p>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 ----- ----- ----- ----- -----</p>
<p>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u>의견수렴</u> 결과와 반영 여부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 ----- <u>의견 수렴</u> ----- ----- -----.</p>
<p>⑥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u>같은 법 제14조</u>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 ----- ----- ----- ----- ----- ----- <u>법 제14조</u> ----- ----- ----- ----- ----- -----.</p>
<p>제9조(평가서 초안의 제작성 등) ① 사업자는 제8조의 <u>의견수렴 절차</u>를 거친 후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p>	<p>제9조(평가서 초안의 제작성 등) ① ----- <u>의견 수렴 절차</u> ----- ----- -----</p>

현행	개정안
<p>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p>	<p>-----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u>최소신청인원</u>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 ----- <u>최소 신청인원</u> -----.</p>
<p>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생략)</p>	<p>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업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u>서류사본</u>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 ----- ----- ----- <u>서류 사본</u> ----- -----.</p>
<p>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u>환경영향평가서등</u>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u>환경영향평가업자</u>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 ----- <u>평가서등</u> ----- ----- <u>평가업자</u> ----- -----.</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u>기간 동안</u>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평가업자가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지 아니할 것. 다만,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u>」 제26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u>재대행하도록 하는</u> 경우는 제외한다.</p> <p>5. <u>평가서</u> 협의절차 과정에서</p>	<p>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 ----- ----- <u>기간 동안</u> ----- ----- ----- -----.</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u>」 (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 제26조 ----- ----- ----- <u>재대행하는</u> ----- -----.</p> <p>5. <u>평가서등</u> -----</p>

현행	개정안
<p>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생략)</p> <p>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남은기간</u>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의 회의는 <u>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u>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u></p>	<p>심의위원회) ① ----- ----- <u>심의·자문하기</u>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제20조제9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말고</u>-----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남은 임기로</u> -----.</p> <p>⑥ ----- <u>규칙으로 정하는 구성원</u> ----- <u>개의하고</u>, ----- ----- -----.</p> <p>⑦ <u>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u></p>

현행	개정안
<p><u>심의회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u></p> <p>1. <u>위원이 해당 심의회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심의회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⑧ <u>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⑨ <u>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3조(소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u>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u></p>	<p><u>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u></p> <p><u><삭제></u></p> <p>⑨ ----- <u>구성·운영, 심의방법 및 -----</u> -----.</p> <p>제23조(소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현행	개정안
<p>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u>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u></p>	<p>----- ----- ----- ----- ----- ----- ----- -----</p>
<p><u>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u>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u> <u>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u> 	<p><u>제24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u></p>
<p>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u>제외한다</u>)의</p>	<p>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 ----- ----- ----- ----- <u>제외할 수 있</u></p>

현행	개정안
<p>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다)----- -----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② (생략)</p>	<p>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제25조제2항에 따른 <u>의견수렴</u>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 ----- -- <u>의견 수렴</u> ----- -----.</p>
<p>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결과와 <u>의견수렴</u> 결과를 제8조제2항의 평가서 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 ----- <u>의견 수렴</u> ----- -----.</p>
<p>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 ----- ----- -----.</p>
<p>1. <u>대상사업</u>의 규모가 별표 1에</p>	<p>1. <u>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u>-</p>

현행	개정안
<p>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p>	<p>----- ----- ----- -----</p>
<p>2.·3. (생략) ②·③ (생략)</p>	<p>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제8조의 <u>의견수렴</u>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제28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등) ① ----- ----- ----- <u>의견수렴</u> ----- ----- ----- -----.</p>
<p><신설></p> <p>② (생략)</p>	<p>② <u>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장과 협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p>

현행	개정안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활동에 참여한 위원(다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생략)</p> <p>제32조(평가서의 공개) ①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p>	<p>----- 사람에게 -----</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자문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p> <p>3. (현행과 같음)</p> <p>제32조(평가서등의 공개) ① -----</p> <p>-----</p> <p>-----</p> <p>-----</p> <p>----- 평가서등 -----</p> <p>-----</p> <p>-----</p> <p>② -----</p> <p>-----</p> <p>----- 평가서등 -----</p> <p>-----</p>

현	행	개	정	안												
<p>니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평가서</u>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p> <p>③ (생략)</p> <p>[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사업의 범위</th> <th>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th> </tr> </thead> <tbody> <tr> <td>3. 에너지 개발</td> <td>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td> <td>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3. 에너지 개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평가서</u>등-----</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사업의 범위</th> <th>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th> </tr> </thead> <tbody> <tr> <td>3. 에너지 개발</td> <td>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td> <td>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u>전기안전관리법</u>」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3. 에너지 개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 <u>전기안전관리법</u> 」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3. 에너지 개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3. 에너지 개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 <u>전기안전관리법</u> 」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및 기타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환경7급 양은영(02-2133-3527)